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6 ~ 72
----------	-----------

제출연월일	2006. 12. 7.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거창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06. 12. 31. 종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09. 12. 31.까지로 연장하고
- 일부 감면사항에 대한 과세전환과 법령의 개정 정비에 따른 감면 조항 신설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확대(안 제18조, 제2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법인에 대해 재산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음으로 비영리 출연법인도 감면대상에 포함
 -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경우의 재산세 감면규정 중 대체입주 기한을 삭제
- 나. 감면목적 달성 등 수익사업용 재산 과세전환(안 제27조 삭제).
-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50% 감면 규정을 유사한 공사 등과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규정 삭제
- 다. 관계법령의 명확화 및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1조, 제16조, 제17조, 제28조제2항).
- 「철도법」 제76조 ⇒ 「철도안전법」 제45조(안 제16조).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안 제17조).
- 라. 거창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연장(부칙)
- 적용시한이 '06. 12. 31 종료됨에 따라 이를 '09. 12. 31까지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법」 제9조

- ▶표준안 : 행정자치부 재정세제본부-6609(2006. 10. 31)
경상남도 세정과-11104(2006. 11. 2)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1)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입법예고(2006. 11. 13 ~ 2006. 12. 2)결과 : 의견제출 없음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7조”를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한다.

제17조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제18조중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을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로 한다.

제24조중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를 “대체입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중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를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로 한다.

제29조의3을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① (생략)
 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연면적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29조의3(재산세 과표 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

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삭제>

제28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① (현행과 같음)
 ② -----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

 -----.

제29조의3(재산세 과표 경감)
 <삭제>

현행	개정안
<p>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p>	

로 적용한다.

제30조(감면 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에 의한 거창군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
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
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
우라도 직권으로 감면 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감면 신청 등) ① -----

-----별지 제1호 서식-----

-----.

② -----

-----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거 창 군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거창군세 감면 조례」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거 창 군 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